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6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서미화 · 김원이 · 박정현
김 윤 · 김병주 · 박지원
서삼석 · 장종태 · 주철현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며,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며,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이하 “국립전남통합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②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등) ① 전라남도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제9조의 차입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등

제10조(지역공공의료과정) 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이하 “지역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비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반환금의 산정방법·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무복무) ① 제1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라남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수련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무복무의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

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절차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신청 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